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 
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 
박 석, 박성연, 박춘선,  
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 
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원형,  
이은림, 이종환, 이희원,  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 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3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전기자동차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 등 실내 공간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·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특히, 차량 간 간격 부족, 피난시설 인근 설치, 감시·진압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화재 확산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,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는 인접 차량과 시설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.
- 현행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 및 안전설비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 및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, 구조적 제약 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함(안 제7조의3제4항).
- 나. 안 제7조의3제4항 기준이 적용된 전용주차구역에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3제5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적 또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.

1. 차량 간 간격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,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상
2. 직통계단, 비상구 및 주요 피난 동선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

⑤ 시장은 제4항의 기준이 적용된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제7조의3제4항 및 제7조의3제5항의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며,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